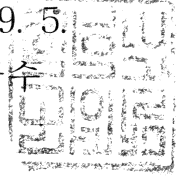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358
----------	------

제출일자 : 2023. 9.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재배치 기준 마련(안 제4조)
 - 야외 운동기구 미설치 지역, 공공장소 우선 고려 설치
 - 접근성 및 이용빈도 극히 저조한 기구는 주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 시 부상자 피해 대비(안 제9조)
- 기구 고의 파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 마련(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3. 8. 4. ~ 8. 24.)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 2의 안내문(경고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내표시문(제6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체육시설 이용 안내(경고)문

체육시설(운동기구 등)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준비운동, 안전점검은 필수, 음주•흡연은 절대 NO 고혈압, 심장병 및 그 밖의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 볼트, 나사 풀림, 기구 흔들거림, 안전장치 등 체육시설(운동기구 등) 안전점검 필수 ※ 본인 몸에 이상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
○ 이용 시	체육시설(운동기구 등)에 부착된 이용법 반드시 확인, 절대 장난 금지 이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기구 이용 즉시 중지
	※ 잘못된 자세, 이용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 ※ 무리한 운동 절대 금지, 각 기구는 한 분씩만 이용하며 일정거리 확보
○ 이용 후	이용 후 정리운동 꼭!, 이용이 끝난 체육시설(운동기구 등)은 제자리에 고정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 다음 사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정돈 철저

※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 낙상, 부딪힘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문 및 안전수칙을 어겨 사고 발생 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 : 00음 행정복지센터(053-668-0000) 또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053-659-0000)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제8조제1항 관련)

점검자 : (인)

점검일	시설명 (관리번호)	위 치	설치기구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시설명	위 치	설치기구	수량	사업비	조성일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1. 사업개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제4조, 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연간 설치 : 20백만원 × 10개소 = 2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 200백만원 정도(연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200백만 원 정도(연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 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 방 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재원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6. 작성자: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팀장 전찬규